

건설노조 관련, 「ILO 결사위 의견」에 대한 정부 입장

- ILO는 건설노조 행위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정부 조치를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음
- 정부 조치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

2024.11.7.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이하, ‘결사위’)는 지난 ‘22년 10월 건설노조가 제기한 진정 건에 대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①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 ②공정위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 ③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request)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 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으나, ILO 결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련 내용도 결사의 자유를 침해(infringe)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urge)한 것이 아니라,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request)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 (건설노조 불법행위 예시) 자기 조합원 채용 및 자기 기계장비 사용 요구, 금품 요구 등 관철을 위해 출입구 봉쇄 및 공사방해, 타워크레인 점거, 비조합원 신분 검사, 고의적 업무태만, 다른 노조와 일자리를 두고 폭력 충돌, 가격담합 등 경쟁 제한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 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제8조), 결사위 또한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2018, 결사위 판정집)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이다.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장현석 (044-202-7129)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권순지 (044-202-7133) 강재영 (044-202-7394)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책임자	과 장	서명석 (044-202-7611)
		담당자	사무관	정장석 (044-202-7615)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	책임자	과 장	이영진 (044-202-4732)
		담당자	사무관	김상진 (044-202-744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책임자	과 장	전인재 (044-201-3538)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박원호 (044-201-4990) 문선일 (044-201-3490)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준현 (044-200-4327)
		담당자	사무관	강승빈 (044-200-4331)
	법무부 공공형사과	책임자	과 장	이병주 (02-2110-3539)
		담당자	검 사	이웅희 (02-2110-3533)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	책임자	과 장	송원영 (02-3150-1020)
		담당자	경 정	이영태 (02-3150-1144)

- ✓ 662. (a) 위원회는 건설업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서의 채용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분야 대표적인 근로자 및 사용자 단체와 협의에 착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request)한다. 위원회는 정부에 이와 관련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a)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take measures to initiate consultations with the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workers and employer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o address the concerns on the instability of employment in the sector and prevent recruitment conflicts on construction sites.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provide information on any measures taken in this respect.

- ✓ 662. (b)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지부의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request)한다. 위원회는 교섭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통해 결사의 자유 행사 및 단체교섭권의 효과적인 인정을 위한 명확한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b)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while investigating and deciding on the conduct of the KCWU Construction Equipment Division branches, the Fair Trade Commission will not interfere with legitimate trade union activities. The Committee expects that the establishment of guidelines for negotiation will create a clear framework for the exercise of freedom of association and the effectiv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 ✓ 662. (c) 위원회는 이 사건과 같이 자신들의 요구를 협상하기 위해 평화적인 단체행동을 조직했거나 작업장의 산업안전 및 보건상의 결함을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체포, 기소 또는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요청(request)한다.

(c) The Committee requests the Government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prosecuted or sentenced for having organized a peaceful collective action to negotiate their demands such as in this case, or for having asserted that they would denounc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hortcomings at the workplace.